

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말소 공고
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말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성명 (법인명)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주소	처분결과 및 사유
서복순	37. 04. 17.	전남 장성군 북이면 백암리 ***	- 처분결과 : 등록제외 - 사유: 사망말소자 ※ 경영주외 농업인: 없음

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 '말소'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2022년 9월 29일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장성사무소장



이의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10일
이의신청 농업경영체	성명 (법인명)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
	주소	전화번호(휴대폰번호)	
처분내용	통지서 (공고문) 번호	통지(공고) 일자	
	처분결과 및 사유		
이의신청 내용	의견		
	증빙서류 목록		
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(법인의 대표)

(서명 또는 인)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 심사·결정	→	결재	→	결과 통보
--------	---	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	---	-------

신청인

처리기관 :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과 사무소 또는 산림청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